



호주의 퇴직연금 인출상품 재정비 현황

장철 연구위원

호주의 퇴직연금제도가 성숙단계로 접어드는 과정에서 정부가 인출상품을 본격적으로 재정비하고 있음. 특히, 은퇴소득상품(CIPR)은 ‘안정소득’, ‘장수위험’, ‘유연인출’과 같은 필수적 요소를 갖추도록 함으로써 은퇴소득의 인출체계를 개선 중에 있음. 동 요건 중 장수위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종신연금을 포함해야 하는 특징을 가짐. 또한 호주는 행동경제학적 요소가 반영된 상품공시 기준을 제시해 가입자의 선택을 유도할 예정임. 이런 사례를 참고하여 우리나라 퇴직연금도 인출상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함

■ 우수한 제도로 평가받는 호주의 퇴직연금제도는 성숙단계에 접어들면서, 포괄적인 은퇴소득 상품(Comprehensive Income Product for Retirement)에 대한 재정비 체계를 수립하고 진행 중임

- 호주의 퇴직연금제도는 Mercer의 연금시스템 국제비교¹⁾에서 최상위권에 있으며, OECD와 세계은행은 다층노후소득보장제도를 모범사례로 언급함²⁾
- 호주는 의무퇴직연금제도(Compulsory Superannuation, 기금형 확정기여형태)를 도입한지 30년이 되었으며 연기금은 1995년 2,290억 호주달러에서 2019년 2.9조 호주달러로 성장함³⁾
 - 호주의 전체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은 1971년 8%, 2019년 16%로 증가하였으며 2055년에는 25%가 될 것으로 전망됨⁴⁾
- 호주는 2014년 금융제도자문위원회(Financial System Inquiry)의 퇴직연금 인출상품 재정비 권고에 따라, 신탁관리자(수탁법인)가 가입자에게 포괄적인 은퇴소득 상품을 제시할 수 있도록 <그림 1>과 같이 퇴직연금 인출상품 재정비 일정을 수립하고 진행 중임
 - 현재 호주는 세제와 제도개선을 마치고 상품개발과 공시와 관련하여 기업, 전문가, 소비자 집단의 의견을 수렴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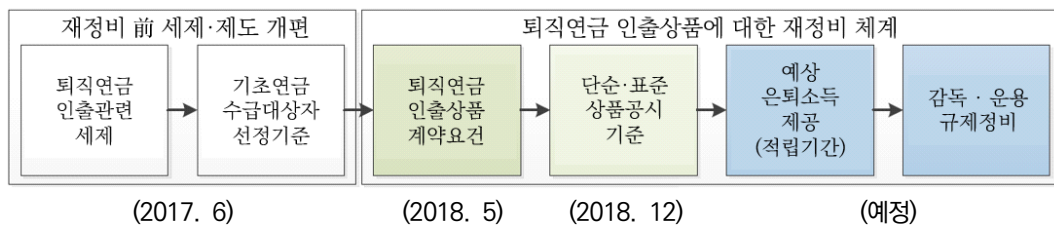
1) Melbourne Mercer Global Pension Index 2019에서 호주는 네덜란드와 덴마크 다음으로 랭크됨

2) 호주 퇴직연금제도 상세는 이경희(2018), 「호주 퇴직연금제도 현황과 시사점」, 『연구보고서』, 보험연구원을 참고함

3) Australia Government(2019), “Retirement Income Review”, Consultation Paper

4) Australia Government Productivity Commission(2015), “Superannuation Policy for Post-Retirement”, Productivity Commission Research Paper, Vol. 1.

〈그림 1〉 퇴직연금 인출상품 재정비 진행일정



자료: Australian Government(2018. 5), "Retirement Income Covenant", Position Paper

■ 은퇴소득상품(CIPR)은 '안정소득', '장수위험', '유연인출'과 같은 필수적 요소를 갖추도록 함으로써 일정소득 이상을 생애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수급할 수 있도록 하되 수급자의 니즈를 반영한 탄력적 인출이 가능하도록 함

- (안정소득보장) 가입자가 더 나은 은퇴생활수준을 영위할 수 있도록 계좌인출연금(Account-Based Pension)⁵⁾에서 제공하는 최저인출비율인 4%~14%⁶⁾보다 높은 소득을 보장해야 함
 - 가입자는 법정 최저인출연령인 55~60세부터 일시금, 계좌인출연금, 종신연금의 인출옵션을 선택할 수 있으며 혼합하여 사용할 수 있음
 - 연금인출 대상자의 80%가 잔여적립금에 특정 비율로 연금이 지급되는 계좌인출연금을 선택하고 있으며, 대부분(약 85%) 정부에서 정한 최저인출비율에 맞춰 인출을 하고 있음(〈그림 2〉 참조)
- (장수위험보장) 은퇴소득은 투자위험, 물가위험, 장수위험에 따라 변동될 수 있지만 생애기간 동안 실질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현금흐름을 제공함으로써 장수위험⁷⁾을 대비할 수 있어야 함
 - 은퇴소득 상품에는 장수위험을 상쇄할 수 있는 즉시 또는 거치식 종신연금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다만 즉시연금으로 모두 선택할 경우, 연금의 특성상 유연인출이 불가능하여(유동성 제약 발생가능) 탄력적 수급이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유연인출의 필요성이 제기됨
- (유연인출보장) 가입자의 대표적인 니즈를 파악하여 자유 인출 수준을 보장하고, 은퇴소득의 원활한 현금흐름이 설계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완전 유연인출이 가능한 계좌인출방식을 상당수의 가입자가 선택하고 있으며, 적립금 규모가 적은 집단에서 일시금⁸⁾ 인출이 많이 발생하고 있음(〈그림 2〉 참조)
 - 특히 유연인출을 통해 주택담보대출, 학자금대출 상환, 의료비 납부 등에 필요한 유동성을 지원하는 경우, 연금인출 대상자의 장기 은퇴소득흐름이 개선될 수 있어 실질적인 은퇴생활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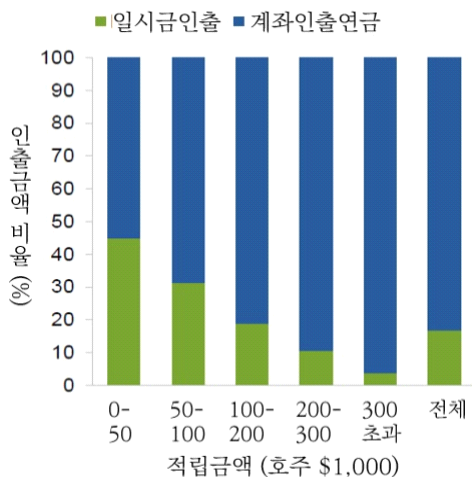
5) 계약자가 적립금에 대해 신탁관리자에게 투자명령을 내리고 지정한 비율로 적립금이 고갈될 때 까지 계속 주기로 인출함

6) 최저인출비율은 법정 최저인출연령부터 65세 미만까지는 4%, 65~74세는 5%, 75~79세는 6%, 80~84세는 7%, 85~89세는 9%, 90~94세는 11%, 95세 이상은 14%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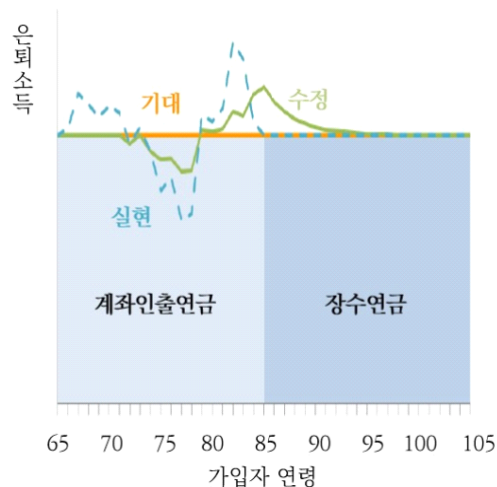
7) 장수위험이란 실제 수명이 길어진 노후에 은퇴소득 대비 소비와 지출이 커져 경제적 어려움이나 노후파산에 이를 수 있는 가능성 또는 확률을 의미함

8) 일시금 인출의 주된 사용처로는 주택 구매 및 담보대출 상환, 자동차 구매 및 담보대출 상환, 가구구성원에 대한 부조 등임

〈그림 2〉 적립금 규모별 인출 형태



〈그림 3〉 CIPR의 대표적인 예, ‘Cut’ 포트폴리오



자료: Australia Government Productivity Commission(2015); Australia Government(2018. 5)

■ 현재 호주 정부는 하나의 디폴트 인출상품을 규정하지 않고 있지만, 계좌인출연금과 장수연금이 혼합된 ‘Cut’ 포트폴리오 형태를 대표적인 은퇴소득상품으로 제안하고 있음

- ‘Cut’ 포트폴리오는 은퇴 후기인 85세를 기준으로 이전에는 계좌인출연금(적립금의 80%)에서 이후에는 장수연금(적립금의 20%)에서 은퇴소득을 지급하는 상품의 구성임(〈그림 3〉 참조)
- 장수연금은 은퇴 시점에 가입해 20~30년의 거치기간을 경과한 후 가입 생존자에게 종신토록 연금을 지급하는 보험상품임

■ 또한 호주 정부는 퇴직연금 가입자의 CIPR 상품 이해를 돕고 선택을 유도하기 위해, 행동경제학적 요소가 반영된 간결하고 표준화된 상품공시 기준을 준비하고 있음⁹⁾

- 호주 정부는 행동경제팀(BETA: Behavioural Economics Team of Australian Government)의 연구를 바탕으로 ‘안정소득’, ‘장수위험’, ‘유연인출’의 일관된 관점에서 상품공시 방안을 탐색하고 있음
 - CIPR이 가입자의 인출상품 선택에 기준점(Reference Point)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인지부담(Cognitive Burden)을 낮출 수 있도록 표, 그래프 등을 활용한 정보전달 방법을 모색 중임

■ 우리나라도 퇴직연금 성숙기에 대비하여 연금수령 계획 및 상품에 대한 체계적인 재정비가 필요하며, 호주의 은퇴소득상품(CIPR) 선택 기준과 같은 퇴직연금 수급관련 제도적 기준을 준비할 필요가 있음 **kiqi**

9) Behavioural Economics Team of the Australian government(2017), “Supporting retirees in retirement income planning”